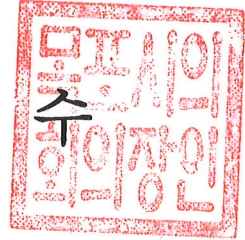


2022.1.24.일자로 제정된 목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 
이에 발령한다.

2022년 1월 28일

목포시의회의장 박 창 수



목포시의회 의회훈령 제 2 호

### 목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, 전보, 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목포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의 승진, 전보, 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과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9조의2를 따른다.

③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·시행 및 인사기준 공개) ① 승진, 전보 등 연간 인사운영기본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,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제1항에 따른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
2. 승진·전보 임용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
3. 정기인사계획,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예고사항
4. 그 밖에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승진·전보 등 정기인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기준을 공개한다.

제5조(고충처리의 활성화) ① 의회 소속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의 처리절차에 따라 본인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임용권자는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는 등 인사에 관한 고충심사 및 처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인사발령 통지 및 임용장교부) ① 인사발령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발령사항을 공표하고 행정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임용장 교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및 6급 이상 전

보시 임용장을 주며 근속승진 및 7급 이하 공무원은 인사발령통지서 교부로 임용장 수여에 대신할 수 있다.

제7조(승진 기본원칙) 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의장이 행한다.

② 의장이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음 승진인사에서 1회 이상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(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적용) 의회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0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배수를 적용한다.

제9조(5급 공무원에의 승진)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대상은 영 제35조제2항에 의한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연 1회 승진대상자를 심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. 다만, 승진대상 인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대상자를 수시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.

②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되, 영 제38조제3항 별표 4에서 규정한 승진임용배수 이내의 해당자로 한다.

③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「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제22조에 따라 5급에 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,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인사사전 예고제)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등 규모가 다수에게 해당될 때 인사요인, 기준, 규모, 시기 등을 인사예정일 3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근속승진 및 전보인사 등 소규모 인사시에 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직관리)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, 교육훈련, 근무성적 및 적성 등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적 재적소에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.

②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 전공분야 또는 이 에 상응한 분야에 보직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근무성적 평정) ①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 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.

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을 따른다.

제13조(근무실적가점 부여) 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제3조제2항의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.

② 실적가점 부여대상 및 배점은 [별표1] 과 같다.

③ 실적가점 신청은 [별지 제2호서식] 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기 준일 다음달 5일까지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
④ 실적가점 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가 겸임하며, 실적가점 인정 여부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에 반영되는 실적가점은 「지방공무원평정규칙」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법을 준용한다.

제14조(결원보충) 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공개채용·특별채용·다른 시군 및 시군의회 전입 등으로 충원한다.

② 다른 기관 공무원 전입은 자체 승진 대상자 및 신규임용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고,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 징계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
3.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4. 법령에 의한 전보가 제한된 자

③ 다른 시군 및 시군의회 전입자는 본인의 동의로 전입전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로 강임하여 임용할 수 있고, 전입일부터 일반승진은 2년, 근속승진은 1년으로 제한 할 수 있다.

제15조(여성에 대한 차별금지) ①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불합리하게 성별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.

② 여성의 능동적인 행정참여를 위하여 신규임용시 균등한 기회부여, 차별 없는 보직관리, 능력과 실적에 따른 승진, 근무성적평정, 포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여성을 배려한다.

제16조(목포시와의 인사교류 활성화) ① 의장은 의회와 목포시 사이 인사교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사교류 시기를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 시기는 목포시 정기인사 일정에 맞추어 하되, 긴급한 인사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상호 협의하여 교류시기를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 별표 1 ]

## 실적가점 대상 및 배점표 (제13조제2항 관련)

| 분 야 별                 |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 | 배 점  | 가 점 요 건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1. 새로운 업무발굴 및 업무관련 창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앙제안 채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 상</li> <li>- 은상·동상</li> <li>- 장려·노력상</li> </ul> </li> <li>※ 시(자체평가) 및 도 제안 채택시는 중앙제안 배점의 2분의1 부여</li> </ul>  | 1.0점<br>0.8점<br>0.6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해직급 수상에 한함</li> <li>• 공동제안의 경우 2명 까지 가점부여</li> <li>• 부제안자(1명)는 주제안자의 2분의1점 부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2. 예산절감 세수증대 기여자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산절감 및 세수확보액(년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억원 이상</li> <li>- 3억원 이상</li> <li>- 1억원 이상</li> <li>- 5천만원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  | 0.5점<br>0.3점<br>0.2점<br>0.1점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원: 2명이내(핵심적인 업무 담당한 담당 및 실무자)</li> <li>• 세원확보 및 예산절감으로 포상금(상사업비)을 받았거나, 중앙부처 감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</li> </ul>    |
| 3. 중앙단위 등 평가 기관표창 수상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앙단위 평가 등 기관표창 수상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우수상(1위)</li> <li>- 우수상(2위)</li> <li>- 장려상(3위)</li> </ul> </li> <li>※ 도단위 표창은 중앙단위 배점의 2분의1 부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5점<br>0.3점<br>0.2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해업무 6개월 이상 근무자</li> <li>• 인원: 3명 이내(담당 및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담당·실무자)</li> <li>• 팀장은 년 1회에 한함.</li> </ul>            |
| 4. 포상가점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청백봉사상, 민원봉사대상</li> <li>•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표창 수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훈장, 포장</li> <li>- 대통령표창</li> <li>- 국무총리표창</li> <li>- 장관, 청·처장(차관급), 도지사 표창</li> <li>- 시장 표창</li> </ul> </li> </ul> | 1.0점<br><br>1.0점<br>0.5점<br>0.4점<br>0.2점<br>0.1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업무와 관련된 포상으로 당해기간에 한하여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</li> <li>• 포상대상 및 개인별 인사기록 확인(인사실무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외국어 능력평가 우수자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국어 경진대회 우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앙단위 평가 우수자</li> <li>- 도 단위 평가 우수자</li> </ul> </li> </ul>   | 0.5점<br>0.3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국어 경진대회 결과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</li> </ul>   |
| 6. 다자녀 출산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자녀 출산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자녀</li> <li>- 3자녀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  | 0.2점<br>1.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자녀는 2007년 1월 이후 출생자를 적용하고, 3자녀 이상은 2010년 4월 이후 출생자를 적용</li> <li>•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하며 당해 직급에 한하여 적용</li> </ul> |
| 7. 자원봉사활동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민과 함께하는 직원 우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기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</li> </ul> </li> </ul>   | 0.1점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봉사활동 참여실적 개인별 출력자료 제출분에 한함(근무시간 내 실적 제외)</li> </ul>  |
| 8. 적극행정우수공무원 가점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포시의회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우수상</li> <li>- 우수상</li> <li>- 장려상</li> </ul> </li> </ul>  | 0.3점<br>0.2점<br>0.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포시의회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자에 대해 당해기간에 한하여 부여</li> </ul>   |

[ 별지 제1호서식 ]

## 인 사 발 령 통 지 서

(직 급)

(성 명)

(발령사항)

년 월 일

목 포 시 의 회 의 장

위와 같이 발령되었기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의 회 사 무 국 장



